추가약정서
(담보제공 및 연대입보 신청서-희망리턴패키지)

본인은 하나은행과 체결한 년 월 일자 『대출거래약정』(이하 "대출약정")에 따른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"공단")에 담보제공 및 연대입보를 신청하며 채무자(본인)가 하나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은 공단의 예금담보와 연대입보를 기초로 한 대출임을 확인하고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.

제1조 (대출이자 및 보증수수료의 계산)

① 채무자(본인)가 하나은행 및 공단에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상환금은 아래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합니다.

1. 월별 분할상환금
2. 대출이자 : 대출원금잔액 * 대출이자율(연 _____%) * 대출일수/ 365일(윤년인 경우 366일)
3. 보증수수료 : 대출원금잔액 * 보증수수료율(연 _____%) * 보증일수/ 365일(윤년인 경우 366일)

② 채무자(본인)는 제1항에서 정한 상환금을 성실히 납부하기로 합니다.

제2조 (대출 연체에 대한 특례)

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은 채무자(본인)가 하나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릅니다. 다만, 대출원금(분할상환금) 및 대출이자를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하나은행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면제하는 것으로 합니다.

제3조 (보증수수료 납입 및 계산 등)

① 하나은행은 대출이자 납입 기일에 대출이자와 공단이 수납하여야 할 보증수수료를 동시에 징수합니다.

② 공단은 대출약정에서 정한 대출이자 납입 기일 및 매 회차별 대출원리금 상환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보증수수료를 동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대출원리금 및 보증수수료 전부를 즉시 이행지체 처리할 수 있으며 채무자(본인)는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.

③ 보증수수료를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.

④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지연배상금률은 【보증수수료율 + (보증수수료율 X 10%)】로 합니다.

⑤ 보증수수료☞지연배상금은 하나은행이 공단을 대신하여 징수하기로 합니다.

제4조 (보증수수료 자동이체)

채무자(본인)는 대출이자☞ 분할상환금☞분할상환원리금을 자동이체 방식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보증수수료 등을 동일한 자동이체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수납처리 하여 줄 것을 신청하며 자동이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나은행의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.

제5조 (신청서의 효력)

① 대출약정에 대하여는 하나은행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신청서에서 정한 사항이 대출약정 및 하나은행의 여신거래 기본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이 신청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.

제6조 (정보제공)

공단과 하나은행은 대출약정 및 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무자(본인)의 개인(신용)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채무자(본인)는 이 신청서의 모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며 이에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채무자 (대출받는자 : 본인) 성 명 : (인)

생년월일 :

주 소 :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하나은행 귀중

5-16-0186(1-1) (2016.06 개정)
(보존년한 : 완제일로부터 5년)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-약관-346호 (2016.04.27)

KEB 하나은행